

유급노동 시간대 비동기화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업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Paid Work Time Desynchronization
on Dual-Earner Couples'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SK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연구센터
연구교수 주익현*

SSK Mental Health & Communal Society
Reserach Professor Joo, Ik Hy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paid work time desynchronization affected housework time desynchronization. Time slot data from the Korean Time Use Survey data from 2014 was analyzed. This study included 1,475 married couples aged 20 to 59. They were dual-earner couples, heterosexual couples, and both partners worked during the day, either during the week or on the weekend.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following four groups: weekday-husband, weekday-wife, and weekend-husband, weekend-wife.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as the desynchronization of paid work increased, the desynchronization of time spent on housework in the weekday-husband and weekend-husband groups also increased. Second, the amount of leisure time did not affect the desynchronization of time spent on housework. Lastly, the amount of time that one person spent on housework increased the housework time desynchronization level. In addition, if the family had children who attended primary, middle, or high school-mothers in the weekday-wife group completed more housework.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paid work time desynchronization might be a way to decrease the amount of time that dual-earner wives' spent housework.

Key Words : 유급노동 시간대 비동기화(paid work time desynchronization), 가사노동 시간대 비동기화(housework time desynchronization), 통근시간량(commune time), 생활시간조사(Korean Time Use Survey)

* 주저자, 교신저자: 주익현(hery@daum.net)

I. 서론

한국사회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하여 고령사회로 확정되었고, 202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8). 초고령 사회에서는 노인빈곤이 심각해지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복지를 위한 청장년층의 세금부담을 늘리면 이들 청장년층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이윤경, 2017).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를 늦추고, 더 나아가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율의 회복이다(김종훈, 2018).

저출산은 주로 여성들의 결혼지연 또는 만혼, 출산지연 등의 결과로 나타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우해봉, 2020).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거나 늦추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 문제이다(이지혜, 2019). 여성 중에서도 맞벌이 가정 아내들은 직장에서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유급노동에 투입하는 동시에 가사노동에도 시간을 쓰고 있다(장인수우해봉, 2017). 이들의 1일 총노동시간량이 남편의 1일 총노동시간량 보다 많아지는 이중부담(second shift)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이다(송다영백경훈, 2020). 이에 따라 서구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직장에서의 노동시간량 단축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해왔으며(김유선, 2017), 한국에서도 2018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해서 직장에서의 과도한 노동시간량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시간량 줄이기는 다양한 일가정양립 정책이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혁명(stalled revolution)’이라고 불리면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Hochschild & Machung, 1989). 한국사회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의 격차는 매우 크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는 남편들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량은 2004년 32분, 2009년 37분, 2014년 40분이었다. 반면 맞벌이를 하는 아내들의 가사노동시간량은 2004년 208분, 2009년 200분, 2014년 194분으로 연도별로 각각 176분, 163분, 154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가사노동시간량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김영미, 2014).

따라서 관련 연구자들은 아내들의 과도한 가사노동시간량을 줄이기 위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량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서 어떤 요인들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량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장인수, 2020; Alvarez, B. & Miles-Touya, D., 2019; Cho, 2016). 개인의 가사노동시간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은 시간가용 가설, 자원권력 가설, 성역할 가설 등을 이론적 자원으로 동원하고 있다(김외숙이기영, 2010). 시간가용가설은 여유시간이 있는 사람이 가사노동을 한다는 내용으로 남성 생계 부양자 가구에서 왜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자원권력 가설은 소득수준이 더 높은 쪽이 소득 수준이 낮은 배우자에게 더 많은 가사를 부담시킨다는 내용으로 가사분업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성역할 가설은 성역할태도가 가부장적인 경우에 아내가 더 많은 가사를 하게 된다는 설명으로 가사분업을 개인 태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된 많은 결과물들이 축적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이 감소한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경험적 증거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주익현, 2018; 지민웅조민수, 2014).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검토해서 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지를 살펴본 다음 어떤 조건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에 미치는 효과를 유효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량 관련 연구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해서 앞서 언급한 시간가용 가설, 자원권력 가설, 성역할 가설을 실증분석 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전개되어져 왔다. 김소영과 진미정(2016)은 2004년, 2009년,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통합해서 개인들의 유급노동시간량이 늘어날수록 가사노동시간량이 줄어들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강해졌는데, 이는 시간가용 가설을 지지하는 다른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안미영, 2016; 은기수, 2009).

김수정과 김은지(2007)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아내의 소득의존도와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면서 자원권력 가설이 기각됨을 보고하였지만, 주익현(2015)은 2004년, 2009년,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통합해서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아내의 소득기여도와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사이에 U자형 관계는 해소되고 부(-)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자원권력 가설이 지지됨을 입증하였다.

허수연(2008)은 맞벌이 가정의 남편들은 성역할태도가 가부장적일수록 가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맞벌이 가정의 아내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성역할태도와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허수연과 김한성(2019)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성역할태도 관련 문항이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질문에 대해 얼마나 반대하는지를 4점 척도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성역할태도가 다차원적으로 측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2014년 한국노동패널 조사와 부가자료에서 조사된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 한다’는 세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을 맞벌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 각각 투입해서 맞벌이 남편은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받는 반면에 맞벌이 아내는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일관된 결과를 얻어내었다.

그런데 이상의 연구들은 응답자 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응답자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 연구들이다. 부부의 경우 개인의 시간사용은 배우자의 시간사용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Moen & Yu, 2000).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을 배우자인 남편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과 시간사용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국내의 모두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연구로는 성지미(2006)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서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반면에 지민웅과 조민수(2014)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년 자료와 2009년 자료를 통합한 후 분석해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고한 바가 있다. 해외 연구들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사이에 부(-)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Leeds & Allmen, 2004)와 정(+)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Connelly & Kimmel, 2009)가 혼재되어 보고되고 있다.

2.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시간대 연구의 필요성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이토록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주익현, 2018). 첫째,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이 클 경우에만 남편이 가사노동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역인과성은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분석(two stage least square)으로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지민웅과 조민수(2014)의 도구분석을 활용한 분석에서 남편의 가

사노동시간량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에 영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였다.

둘째, 남편과 아내가 하는 가사노동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이를테면 아내는 식사준비, 청소, 세탁과 같은 핵심가사활동을 하는 대신 남편은 가전제품 수리나 세차와 같은 비핵심가사활동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Kan, Sullivan & Gershuny, 2011). 하지만 남편의 (비)핵심가사노동시간량과 아내의 (비)핵심가사노동시간량 사이에서도 명확한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주익현·최성수, 2019).

셋째, 가전제품이 보급되면서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증가했듯이 남편의 가사활동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기능적으로는 가전제품과 같이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수동적인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일 수 있다. 만약 아내가 부재중인 순간에도 남편이 가사활동을 수행한다면 귀가한 아내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행해야 할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비로소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줄어들 수 있다. 즉,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줄어드는 조건은 시간량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간대 연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생활시간조사 시간대 자료의 경우, 각 시간대별로 특정 활동을 하는 인구의 수나 비율을 제시하는 기술통계 방식의 분석은 199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실행되어져 왔다(은기수, 2015). 하지만 배열 분석(sequence analysis)과 같은 본격적인 실증분석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연구 중에서는 조미라(2018)가 유급노동활동에 대해서 배열분석을 실시해서 맞벌이 부부를 ‘표준형’, ‘남녀-장시간근무형’, ‘남성-장시간형’, ‘여성-단시간형’, ‘남녀교대형’으로 구분한 다음 어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이러한 유형이 결정되는지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 권소영과 이재림(2019)의 경우 유급노동시간량 중에서 야간근무시간의 비율을 산출해내서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해외연구 중에서는 Lesnard(2008)가 프랑스 1986년,

1999년 시간사용자료를 분석해서 부부의 유급노동활동시간량과 더불어 유급노동활동시간대를 배열분석 결과를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의 비율이 줄어들수록 가족의 연대가 해체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량에 대해서 시간대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주익현과 최성수(2019)가 있다. 이들은 남편과 아내가 동시간대에 함께 가사노동을 하게 되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량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 사이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아내가 부재중인 시간대에 남편이 가사를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년 시간대 자료를 이용해서 부부를 대상으로 개인의 가사노동시간량 중에서 몇 시간을 혼자서 가사활동을 했는지 그 비율(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을 변수화한 다음에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모형에 핵심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편이 홀로 가사를 하는 시간의 비율이 높을수록(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중-주말, 맞벌이-홀벌이, 핵심가사-비핵심가사에 따라 분류된 총 8개의 모든 분석집단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이들은 분석결과를 놓고 유연근무시간제도의 도입이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에 유리하며, 따라서 이 제도가 맞벌이 가정의 아내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가사노동 시간 줄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한준(2012)도 맞벌이 가정의 아내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유급노동시간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만약 유급노동시간대의 유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맞벌이 가정의 아내들이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정규직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받는 것뿐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론적 의문점이 하나 발생한다.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을 줄이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분석결과는 수용할 수 있지만 과연 유연근무시간제도 등을 통한 유급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를 보장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 유급노동활동은 직업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활동 중 하나인 동시에 가장 많은 시간량이 투자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유급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주익환·최성수, 2019).

한편 맞벌이 부부 사이의 유급노동시간대의 어긋남이 가사노동시간대의 어긋남을 항상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하나의 가능한 예로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시간대가 어긋나더라도 남편과 아내 어느 한 쪽의 통근시간은 짧고 또 다른 한쪽의 통근시간은 길어서 집에서 출근하는 시간대와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는 시간대는 부부가 일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급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가 가사노동 시간대의 비동기화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 또 만약 통근시간량이 동일해서 부부가 집에 있는 시간대가 어긋나더라도 어느 한쪽의 여가시간량이 길고 나머지 한쪽의 여가시간량이 짧다면 이 경우에도 유급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가 가사노동 시간대의 비동기화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만약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된다면 유연근무시간제도 도입의 정당성 확보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이 높아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주익현과 최성수(2019)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증가하더라도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이 감소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급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을 높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유연근무시간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유급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이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바가 없기에 본 연구에서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에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급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은 높아지는가? 둘째, 통근시간량은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2. 자료소개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 시간대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1인을 이틀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첫날 응답만을 분석에 사용하여 반복측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였다.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부 중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과 직업이 있고, 응답일이 둘 다 근무일이었던 맞벌이 부부 1,475쌍이다. 직업 중에서 1차 산

업 관련 직업의 경우 사례수가 매우 작아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시간 사용은 주중과 주말에 각각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문금, 2005). 따라서 주중과 주말, 남성과 여성으로 집단을 총 넷으로 나눠서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 별 응답자 수는 주중 1,267쌍, 주말 208쌍이었다.

3. 변수설명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이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10분 간격으로 응답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록하게 하는 시간일지를 작성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시간대 자료를 통해 부부가 동시간대에 같은 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사노동시간량을 분모로, 그리고 그 중에서 배우자와 동시간대에 가사노동활동을 하지 않은 시간량을 분자로 놓고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변수를 생성하였다. 시간대 자료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 중에는 배열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열 분석은 근본적으로는 시간 사용 패턴을 요약하고 유형화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부가 정확히 어떤 활동에 몇 시간을 사용했고, 그 중에서 몇 시간을 동시간대에 함께 사용하고 몇 시간을 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세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권소영이재림, 2019; 주익현·최성수, 2019)의 방식을 참고해서 직접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을 계산해서 변수화하였다. 이 값은 0부터 1사이(0~100%)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배우자와 동시간대에 가사활동을 한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홀로 가사활동을 한 것이다. 만약 가사노동시간량이 2시간인데 남편의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이 1(100%)이라면, 이 경우 남편은 2시간 동안 홀로 가사노동을 한 것이다. 기존연구(주익현·최성수, 2019)에 따르면 남편이 홀로 가사를 하는 경향이 있

을수록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은 감소한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외출을 했을 때 남편 혼자서 가사를 전부 수행되면 귀가 후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은 연속형 변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최소자승법에 의한 일반회귀분석으로 절편과 기울기를 구하였다. 시간 사용은 0시간이라는 하한선과 24시간이라는 상한선을 가지기 때문에 절단값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Foster & Kalenkoski(2013)나 Stewart(2013)는 OLS 모형이 시간사용자료 분석에 더 적합함을 강조하고 있기에 토빗 모형을 본문에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2) 독립변수

분석에 투입한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핵심독립변수는 우선 응답자 개인의 유급노동시간량을 분모로, 배우자와 동시간대에 유급노동활동을 하지 않은 시간량을 분자로 취해서 '배우자와의 유급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을 산출하여 핵심독립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개인과 배우자의 유급노동시간량, 가사노동시간량, 여가노동시간량, 통근시간량은 시간(hour) 단위로 분석에 투입해서 그 효과를 통제하였다.

개인 및 배우자 특성으로 연령은 만 나이로 코딩하여 설명변수로 투입하였다. 직업은 사무판매팀서비스직을 준거변수로 설정한 다음에 고위전문직, 단순조립기능직을 가변수 형태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교육년수는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 6년, 중학교 졸업 9년, 고등학교 졸업 12년, 2년제 대학 졸업 14년, 4년제 대학 졸업 16년, 석사 졸업 18년, 박사졸업에 22년을 부여하였다. 재학·휴학·중퇴의 경우에 최종 졸업 학력의 교육년수에 재학·휴학·중퇴 학력의 교육년수 중간값을 더해서 교육년수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중퇴의 경우에 중졸 9년에 고등학교 교육년수 3년의 중간값인 1.5년을 더해서 10.5년으로 코딩하였다. 성평등의식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매우 동의하는 경우 1점, 동의하는 경우 2점, 반대하는 경우 3점, 매우 반대하는 경

우 4점을 부여한 생활시간조사 4점 척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구 특성으로 가구소득은 구간별로 측정이 되었다. 이를 범주형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1점은 100~200만원 미만, 2점은 200~300만원 미만, 3점은 300~400만원, 4점은 400~500만원, 5점은 500~600만

원, 6점은 600~700만원, 7점은 700만원 이상이다. 미취학 자녀의 수, 초중고교 재학 자녀의수, 동거부모의 수를 연속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동거하는 부모의 가사노동시간량도 시간(hour)단위로 코딩해서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상 코딩내역에 따른 분석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맞벌이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약(N=1,475)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가사노동 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0.2	0.4	0.0	1.0
유급노동 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0.5	0.3	0.0	1.0
연령	45.9	7.9	21.0	59.0
교육년수	13.7	2.7	3.0	22.0
직업				
고위전문직	(18.4)			
사무관매서비스직	(41.5)			
단순조립기능직	(40.1)			
성평등의식	2.7	0.8	1.0	4.0
유급노동 시간량	7.8	2.1	0.7	15.8
가사노동 시간량	0.2	0.4	0.0	2.8
여가 시간량	2.9	1.6	0.0	8.5
통근 시간량	1.6	1.1	0.0	9.3
가사노동 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0.9	0.2	0.0	1.0
유급노동 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0.4	0.2	0.0	1.0
연령	43.1	7.6	20.0	59.0
교육년수	13.2	2.7	0.0	22.0
직업				
고위전문직	(25.8)			
사무관매서비스직	(51.8)			
단순조립기능직	(22.4)			
성평등의식	3.1	0.8	1.0	4.0
유급노동 시간량	6.6	2.2	0.1	13.2
가사노동 시간량	1.9	1.2	0.0	7.0
여가 시간량	2.3	1.4	0.0	8.3
통근 시간량	1.2	0.8	0.0	6.3
가구소득				
100~200만원 미만	(2.0)			
200~300만원 미만	(10.6)			
300~400만원 미만	(21.6)			
400~500만원 미만	(23.0)			
500~600만원 미만	(17.0)			
600~700만원 미만	(10.4)			
700만원 이상	(15.5)			
미취학 자녀의 수	0.2	0.6	0.0	3.0
초중고 재학 자녀의 수	0.8	0.9	0.0	4.0
동거 부모의 수	0.1	0.3	0.0	2.0
동거 부모의 가사노동 시간량	0.2	0.9	0.0	8.7

주: 범주형 변수의 경우 ()안에 항목별 비율 제시

회귀분석에 앞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연령, 교육년수가 배우자의 연령, 교육년수 사이에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동질혼이 강하다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나타날 수 있는 분석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해서 배우자의 연령과 교육년수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4. 응답자 시간사용

다음 <표 2>는 남편·아내, 주중·주말 구분에 따른 총 네 집단의 가사노동시간량, 유급노동시간량, 여가시간량, 통근시간량,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배우자와의 유급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남편·주중의 경우 가사노동시간량은 .178로 아내·주중 1,880의 약 9.5%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그나마 비동기화 수준이 .208수준에 불과해서 80% 이상의 시간을 아내와 동시간대에 가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연구(주익현·최성수, 2019) 결과를 고려해보면 짧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그나마 아내와 동시간대에 사용함으로써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내·주중의 경우 유급노동에 6,603시간을 사용한 다음에 가사노동에 1,880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노동활동에 총 8,483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값은 남편의 총 노동시간 8,027보다 .456시간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또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이 .926으로 최댓값이 1임을 감안해보면 남편들은 대부분의 가사활동을 아내와 동시간대에 수행하는 반면에 아내들은 가사노동시간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사활동은 남편 없이 홀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말에도 이러한 경향은 대동소이하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량은 .219, 비동기화 수준은 .209이며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은 1,916, 비동기화 수준은 .929였다. 아내의 노동시간 총량은 8,429였으며, 남편의 노동시간 총량은 7,854로 둘의 차이는 .575시간이었다. 이 외 주중 여가시간량은 남편이 아내보다 .499시간 더 길었고 통근시간량은 .492시간 더 길었다. 주말 여가시간량은 .629시간 더 길었고, 통근시간량은 .292시간 더 길었다.

유급노동시간량의 경우 주중에는 남편이 아내보다 1,246시간 더 길었고, 주말에는 1,122시간 더 길었다. 동기화 수준은 남편·주중 .449, 아내·주중 .353, 남편·

<표 2> 주중·주말별 맞벌이 부부 시간사용 평균 비교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편	가사노동시간량	0.178	0.385	0.219	0.473
	유급노동시간량	7.849	2.008	7.635	2.607
	여가시간량	2.820	1.516	3.134	1.817
	통근시간량	1.688	1.108	1.372	0.996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0.208	0.389	0.209	0.393
	유급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0.449	0.247	0.501	0.266
아내	가사노동시간량	1,880	1,148	1,916	1,194
	유급노동시간량	6,603	2,162	6,513	2,361
	여가시간량	2,321	1,389	2,505	1,425
	통근시간량	1,196	0,811	1,080	0,753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0.926	0.227	0.929	0.213
	유급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0.353	0.241	0.413	0.275

주말 .501, 아내-주말 .413이었다. 남편의 아내보다 홀로 유급노동을 하는 시간량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유급노동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일 것이다.

IV. 연구결과

다음 <표 3>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을 종속 변수로 설정한 다음 설명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투입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이다. 모형1은 주중-남편, 모형2는 주말-남편, 모형3은 주중-아내, 모형4는 주말-아내의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핵심독립변수인 ‘배우자와의 유급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남편 집단의 경우 비표준회귀계수가 .206($p < .001$) 표준회귀계수는 .131이었다. 주말 남편 집단의 경우 비표준회귀계수가 .302($p < .001$) 표준회귀계수는 .204이었다. 아내의 경우 ‘배우자와의 유급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편의 경우에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대가 아내의 유급노동시간대와 비동기화 되는 수준이 높을수록 홀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유급노동시간대 동기화 수준은 아내의 홀로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의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남편의 경우 아내와의 유급노동시간대가 비동기화 될수록 홀로 가사노동을 하지만 아내의 경우 남편과의 유급노동 시간대가 비동기화 되더라도 남편과 함께 가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남편이 홀로 가사노동을 수행할수록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전체적으로 감소(주익현·최성수, 2019)하며, 따라서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벌이 여성의 이중부담(second shift)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한준, 2012)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발견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연구문제 1).

한편 여가시간량이나 통근시간량이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주중-남편 집단에서 배우자의 통근시간량만 부(-)적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연구문제 2).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형1인 주중-남편 분석결과에서 배우자의 통근시간량만 비표준회귀계수가 $-.024(p < .05)$, 표준회귀계수가 $-.050$ 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아내가 집에 없을 때 가사를 최대한 많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맞벌이 남편의 경우 유급노동시간량, 가사노동시간량, 유급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 통근시간량이 많아지더라도 가사노동 비동기화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유연근무시간제도가 통근시간량이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남편들이 아내가 부재중일 때 가사를 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통근시간을 이유로 유연근무시간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에게 이 제도가 가지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독립변수 외에 설명변수들의 효과(연구문제 3)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수항을 보면 주중 남편, 주말 남편을 분석한 모형 1과 2는 상수항이 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주중 아내, 주말 아내를 분석한 모형 3과 4는 상수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0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아내들이 홀로 가사를 수행하는 반면에 남편들은 홀로 가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준다.

네 개의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로는 본인의 가사노동시간량이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량의 효과는 주말-남편 집단을 제외(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계수의 방향은 다른 집단들의 계수와 일치)한 나머지 세 집단에서는 부(-)적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중-남편 집단에서는 본인의 유급노동시간량이 증가할수록 홀로 가사를 수행하는 경향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중 남편의 경우에는 유급노동시간량이 증가해서 가용시간이 줄어들면 가사노동시간량을 줄어들 뿐만 가사를 홀로 하는 경향도 약해진다는 식으로 시간가용가설을 확장하는데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중-남편 집단에서는 가구소득이 400만원대인 이들과 비교해서 100만원대인 이들은 가사를 홀로 수행하는 경향이 약하고, 600만

원대인 이들은 가사를 홀로 수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아내 집단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를 홀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중-아내 집단에서 초중고 재학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홀로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내들이 경험하고 있는 과도한 가사노동은 가사의 총 시간량 뿐만 아니라 자녀돌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사도 아내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거부모의 가사노동시간량이 늘어날수록 주중 아내 집단에서는 아내가 혼자서 가사를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일관되지 않고 다소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를 통해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3〉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추정 회귀 모형

	모형 1 (주중-남편)		모형 2 (주말-남편)		모형 3 (주중-아내)		모형 4 (주말-아내)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유급노동 시간대 비동기화 수준	.206*** (.045)	.131	.302*** (.089)	.204	.048 (.027)	.051	.028 (.056)
연령	.000 (.001)	.006	.005 (.003)	.096	.004*** (.001)	.133	.004 (.002)	.155
직업(ref=사무관매서비스직)								
고위전문직	.012 (.024)	.000	-.109 (.083)	.000	.009 (.015)	.000	-.010 (.047)	.000
단순조립기능직	.014 (.021)	.018	.006 (.051)	.008	.013 (.016)	.024	-.027 (.035)	-.058
응답자 본인								
교육년수	.001 (.004)	.009	.015 (.010)	.092	-.000 (.003)	-.001	.004 (.007)	.043
성평등의식	-.010 (.011)	-.020	.012 (.028)	.026	.008 (.008)	.029	.004 (.018)	.016
유급노동시간량	-.018** (.006)	-.091	-.013 (.012)	-.086	-.006 (.004)	-.057	-.000 (.009)	-.003
가사노동시간량	.590*** (.023)	.585	.504*** (.050)	.606	.049*** (.007)	.246	.052*** (.015)	.289
여가시간량	.005 (.007)	.020	.010 (.017)	.045	-.004 (.005)	-.025	-.008 (.013)	-.052
통근시간량	-.015 (.009)	-.044	.010 (.025)	.026	-.016 (.008)	-.056	.014 (.021)	.049

유급노동 시간대 비동기화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업에 미치는 효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주중-남편)		(주말-남편)		(주중-아내)		(주말-아내)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직업(ref=사무관매서비스직)								
고위전문직	-.023	.000	-.012	.000	.001	.000	-.068	.000
	(.021)		(.069)		(.016)		(.054)	
단순조립기능직	.019	.020	-.081	-.093	.013	.027	-.025	-.059
	(.023)		(.051)		(.014)		(.033)	
성평등의식	-.011	-.024	-.018	-.038	-.005	-.017	-.000	-.001
	(.011)		(.027)		(.008)		(.018)	
배우자								
유급노동시간량	.013 [*]	.075	.026	.154	.003	.031	-.001	-.007
	(.006)		(.014)		(.004)		(.008)	
가사노동시간량	-.045 ^{***}	-.132	-.003	-.009	-.110 ^{***}	-.186	-.154 ^{***}	-.341
	(.010)		(.022)		(.016)		(.034)	
여가시간량	-.007	-.025	.007	.025	.001	.005	.005	.047
	(.008)		(.019)		(.005)		(.011)	
통근시간량	-.024 [*]	-.050	-.014	-.026	.000	.001	.002	.012
	(.012)		(.032)		(.006)		(.017)	
가구소득(ref=400~500만원)								
100~200만원	-.141 [*]	.000	.087	.000	.022	.000	.084	.000
	(.065)		(.133)		(.046)		(.089)	
200~300만원	.004	.000	.033	.000	.002	.000	.037	.000
	(.033)		(.069)		(.023)		(.047)	
300~400만원	.009	.000	.084	.000	-.006	.000	.040	.000
	(.025)		(.062)		(.018)		(.042)	
500~600만원	.034	.033	.053	.048	-.013	-.022	.069	.116
	(.027)		(.071)		(.019)		(.048)	
600~700만원	.068 [*]	.054	-.040	-.028	-.008	-.011	.012	.016
	(.031)		(.083)		(.022)		(.056)	
가구	.033	.031	-.009	-.007	-.028	-.045	-.024	-.034
	(.029)		(.082)		(.020)		(.054)	
미취학 자녀의 수	-.020	-.030	.008	.010	.018	.046	.040	.088
	(.019)		(.058)		(.013)		(.039)	
초중고 재학 자녀의 수	-.016	-.038	.021	.050	.018 ^{**}	.075	.008	.033
	(.010)		(.026)		(.007)		(.018)	
동거 부모의 수	.006	.005	.008	.005	.012	.016	.014	.017
	(.049)		(.112)		(.034)		(.075)	
동거 부모의 가사노동시간량	-.013	-.030	-.017	-.028	-.026 [*]	-.104	.012	.035
	(.016)		(.046)		(.011)		(.031)	
상수항	.227		-.557		.673 ^{***}		.580 ^{**}	
	(.136)		(.327)		(.095)		(.220)	
N	1,267		208		1,267		208	
R ²	43.3%		51.8%		18.9%		26.6%	
Adjusted R ²	42.1%		44.5%		17.2%		15.5%	

주: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출산율이 1.5이하로 떨어지면 초저출산이라고 명명한다. 현재 한국은 1997년 출산율 1.52에서 1998년 출산율 1.45를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지 22년이 지나고 있다. 2026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낮은 출산율은 가까운 미래에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과 노인복지를 위해 청장년층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져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 이와 동시에 낮은 수준의 출산율은 그 자체로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 특히 출산 가능 인구인 여성들의 삶의 질이 열악함을 나타내기도 한다(한준, 2017).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시기의 지연, 또는 회피일 수 있다. 그리고 결혼 후(또는 결혼과 무관하게) 출산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의 원인 중 하나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한 가사분업이 지목되고 있다. 맞벌이 아내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가사노동은 이들의 유급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막고 퇴출을 가속화시키며 임금과 승진에서의 성별 격차를 야기한다(Ferrant, Pesando & Nowacka, 2014)

따라서 관련 연구자들은 맞벌이 가정 남편들의 가사노동시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이를테면 배호중(2015)은 유급노동시간이 유독 긴 한국 노동시장의 근무풍토 속에서 남편들이 가사활동을 위해 유급노동시간량을 줄일 수 없으며, 그 결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줄어들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접근들은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증가하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실증분석 연구들은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 사이에 일관된 관계를 보고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주익현과 최성수(2019)는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역인과 관계의 가능성, 남편과 아내가 하는 가사의 종류가 다를 가능성, 그리고 남편의 미숙한 가사능력이 아내에게 더 큰 가사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남편과 아내가 동시간대에 가사를 할 경우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사이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시간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수용해서 단순히 남편이 가사를 적게 하고 아내가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들이 혼자서 가사를 수행하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줄어들 수 있고, 따라서 남편들이 혼자서 가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관점을 취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어떤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맞벌이 부부가 혼자서 가사를 하도록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외출 중일 때 남편들이 혼자서 가사를 모두 수행하면 귀가를 한 아내의 입장에는 가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가사에 대한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즉, 아내의 가사노동시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량을 늘리는 동시에 남편이 최대한 혼자서 가사를 수행토록 만드는 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유급노동시간대가 어긋날수록 남편들은 가사를 홀로 수행하는 시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아내의 경우에는 부부의 유급노동시간이 어긋난다고 해서 아내가 홀로 가사를 하는 시간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유급노동시간의 비동기화가 남편들로 하여금 홀로 가사를 수행토록 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험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남편들은 홀로 가사를 하는 경향도 강했다. 셋째, 여가시간량이나 통근시간량이 길어진다면 유급노동시간대 비동기화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중-남편 집단

에서 배우자의 통근시간량만 남편의 배우자와의 가사노동시간대 비동기화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본인의 통근시간량이 본인이 홀로 가사노동을 하는 것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통근시간량이 길더라도 일단 가사를 하는 경우에는 남편 혼자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급노동시간대가 어긋나면 남편들은 혼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여가시간량이나 통근시간량과 무관하다. 즉 유연근무시간제도의 확대가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이 경험적으로 지지되는 것이다. 이 지점이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급노동 시간대의 비동기화와 여가시간량, 통근시간량, 그 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가사노동시간대의 비동기화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정 활동의 시간대를 활용한 변수를 생성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것은 기존 생활시간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함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재학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맞벌이 아내가 가사노동을 혼자서 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는 자녀와 관련된 가사는 어머니들이 전담하기 때문일 수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기도 한다. 우선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현 시점에서는 이미 5년 전 자료이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가 공개되면 1999년부터 5년 간격으로 실시되어져 온 생활시간조사 자료들을 통합해서 시계열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후속연구에서는 가사의 총량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가사의 종류별로 또 시간대별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정책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유연근무시간제도가 확대될 경우 맞벌이 가정의 남편들이 통근시간과 무관하게 홀로 가사를 수행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아내들은 남편과 함

께 가사를 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맞벌이 부부가 언제 어떤 종류의 행위를 수행해야 서로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정교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권소영이재림. (2019).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유형화와 유형별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의 양, 근로시간대, 근로시간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4), 1-25.
- 2) 김소영·진미정(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3), 65-84.
- 3) 김수정·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41(2), 147-174.
- 4) 김유선(2017).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KLSI Issue Paper, (2).
- 5) 김영미(2014). 복지국가 제도와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1(1), 143-177.
- 6) 김외숙이기영(2010). 가족자원관리학. 서울: 방송대출판부.
- 7) 김종훈(2018).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보건복지포럼, 2018(1), 61-74.
- 8) 배호중(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홀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151-181.
- 9) 성지미(2006).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4), 1-29.
- 10) 손문금(2005).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8(1), 277-311.
- 11) 송다영·백경훈(2020).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기본계획 평가와 대안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

- 여성학, 36(1), 175-209.
- 12) 안미영(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112, 13-40.
 - 13) 우해봉(2020).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0(1), 23-36.
 - 14)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15) 은기수(2015). 2014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활용한 한국인의 삶 심층분석. *통계청*.
 - 16) 이윤경(2017).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방향 모색: 일본 사례의 시사점 검토. *보건복지포럼*, 254, 9-17.
 - 17) 이지혜(2019).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보건복지포럼*, 2019(2), 59-72.
 - 18) 장인수(2020). 한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 양상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2007, 2016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446-476.
 - 19) 장인수·우해봉(2017). 기혼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여성연구*, 95(4), 41-72.
 - 20) 조미라(2018). 한국 기혼부부의 가구노동시간 유형화 연구: 남녀의 시간일지를 결합한 배열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사회복지학*, 70(1), 7-32.
 - 21) 주익현(2015). 맞벌이 여성의 소득기여도가 가사 시간량에 미치는 효과: 2004년, 2009년, 2014년 시계열적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6(2), 49-68.
 - 22) 주익현(2018).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맞벌이 부부가 동시간대에 가사활동을 하는 시간의 비율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8년 후기 한국인구학회 자료집.
 - 23) 주익현·최성수(2019). 남자가 여자를 '도와줄' 때: 부부 간 가사노동 분업에서 시간대 동기화의 중요성. *한국사회학*, 53(2), 213-251.
 - 24) 지민웅·조민수(2014). 맞벌이 임금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상호 대체제인가? 법정근로 시간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노동시간의 변화를 이용하여. *여성경제연구*, 11(1), 1-31.
 - 25) 통계청(2018).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 대전: 통계청
 - 26) 한준(2012). 근로시간의 유연화 경향과 시사점. *임금연구(여름호)*, 18-28.
 - 27) 한준(2017). 한국사회와 저출산의 뒷.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22.
 - 28) 허수연(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29) 허수연·김한성(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 30) Alvarez, B., & Miles-Touya, D. (2019). Gender imbalance in housework allocation: a question of time?.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7(4), 1257-1287.
 - 31) Cho, S. (2016). Determinant Factors of Time Allocation within Married Couple. *Journal of Labour Economics*, 39(1), 57-79.
 - 32) Connelly, R., & Kimmel, J. (2009). Spousal influences on parents' non-market time choice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7(4), 361.
 - 33) Ferrant, G., Pesando, L. M., & Nowacka, K. (2014). Unpaid Care Work: The missing link in the analysis of gender gaps in labour outcomes. *Boulogne Billancourt: OECD Development Center*.
 - 34) Foster, G., & Kalenkoski, C. M. (2013). Tobit or OLS? An empirical evaluation under different diary window lengths. *Applied Economics*, 45(20), 2994-3010.
 - 35) Hochschild, A. & Machung, A. (1989). *The second shift: Working parents and the revolution at home*.
 - 36) Kan, M. Y., Sullivan, O., & Gershuny, J. (2011). Gender convergence in domestic work:

- Discerning the effects of interaction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from large-scale data. *Sociology*, 45(2), 234-251.
- 37) Leeds, M. A., & Allmen, P. V.(2004). Spousal complementarity in home production.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3(4), 795-811.
- 38) Lesnard, L.(2008). Off-scheduling within dual-earner couples: An unequal and negative externality for family t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2), 447-490.
- 39) Moen, P., & Yu, Y.(2000). Effective work/life strategies: Working couples, work conditions, gender, and life quality. *Social problems*, 47(3), 291-326.
- 40) Stewart, J. (2013). Tobit or not Tobit?.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38(3), 263-290.

- 투 고 일 : 2020년 06월 01일
- 심 사 일 : 2020년 07월 05일
- 게재 확정일 : 2020년 08월 05일